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민원(1AA-1901-2764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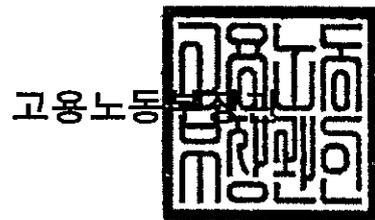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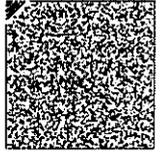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금액 한도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3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2조의3 제3항에서는 수의계약 절차 및 방법(수의계약 대상자 자격요건,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나, 금액의 한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사유(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장애인고용법은 국가계약법 제3조에 따라 국가계약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3을 근거로 수의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4. 이외, 우선구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장애인고용과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희정 행정사무관 박보현 과장 박희준  
 진결 2019. 2. 27.  
 협조자  
 시행 장애인고용과-727 (2019. 2. 27.) 접수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7486 팩스번호 044-202-8055 / hjhj6749@korea.kr / 비공개(5)  
 "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